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김 하 영

## I. 회의 개요

### 1. 회의 배경

2012년 국제해법회의(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이하 'CMI')에서는 선박경매국이 매수인에게 부담 없는 소유권(clean title)을 부여하고 이를 당사국들이 승인하도록 하는 국제규범 초안(A Proposed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이하 '베이징 초안')이 제안되었으며, 이후 2018년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53차 본회의에서 베이징 초안을 바탕으로 선박경매에 관한 국제규범 성안작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스위스)이 제6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 의제로 채택되었다.

### 2. 회의 경과

작업반은 2019년 제35차 회의를 시작으

로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선박경매의 승인 관련 국제규범의 형식을 모델법(model law)이 아닌 협약(convention)으로 하고, 그 적용 범위는 회원국들이 실시한 선박경매에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제38차 작업반 회의는 2021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독일 출신 Ms. Beate Czerwenk의 주재로 대면과 화상 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베이징 초안의 제3차 수정안(A/CN.9/WG.VI/WP.90, 이하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하였다.

### 3. 회의 결과 요지

제38차 회의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협약의 적용범위(수정안 제3조), 통지 절차의 기능(수정안 제4조), 선박경매증서의 발급

및 효력(수정안 제5조), 선박경매의 취소와 전속적 관할(수정안 제9조) 및 정의 규정(수정안 제2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수정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대한 구체적 문언을 합의하고, 선박경매 취소 시 당해 선박경매와 선박경매증서의 효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 논의는 사무국 수정안을 바탕으로 차기 회의에서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선박경매 취소 시 선박경매와 선박경매증서의 효력, 온라인 등기국(repository)의 운영 방법, 기타 정의규정들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II. 제38차 작업반 회의 주요

### 논의사항

#### 1. 협약의 적용범위(수정안 제3조)

수정안은 선박경매가 실시되는 시점(at the time of judicial sale)에 선박이 경매국의 영토 내에 위치하고(수정안 제3조 제1항 a호), 선박경매 결과 매수인이 “부담 없는 소유권(clean title)”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항 b호)에 협약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경매 실시 시점을 언제로 해석할지와 수정안 제3조 제1항 b호의 삭제 여부가 논의되었다.

#### 가. 수정안 제3조 제1항 a호

작업반은 선박경매를 실시하는 시점(at the time of judicial sale)이 언제인지에 대한 해설(explanatory note)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선박경매 실시 시점에 관한 여러 해석기준<sup>1)</sup>들이 제시되었으나, 각국의 다양한 입법례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설에는 본 조항의 취지가 경매국이 해당 선박경매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선박경매절차 내내 선박이 경매국의 영토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수정안 제3조 제1항 b호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수정안 제3조 제1항 b호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개별 규정(수정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 반영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작업반은 같은 호가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 선박경매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절차 전반을 의미한다는 견해, 선박경매 개시시점에만 경매국 영토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문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되, 수정안 제5조 내지 제10조는 선박경매 결과 ‘부담 없는 소유권(clean title)’이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시하는 문안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2. 통지의 기능(수정안 제4조) 및 국제적 효력(수정안 제6조)

수정안 제4조 통지 조항이 독자적 의미의 규정(stand-alone provision)인지 아니면 선박경매증서의 발급요건인지, 또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 발생요건인지 논의되었다.

수정안 제4조는 독자적 의미의 규정이 아니며, 이를 국제적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경미한 통지절차 위반을 이유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수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작업반은 수정안 제4조의 통지 절차는 선박경매증서 발급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반영해 수정안 제6조(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의 문안을 수정하였다.

작업반은 수정안 제6조에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은 선박경매증서가 발급된 경우에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선박경

매의 국제적 효력은 수정안 제4조의 통지 절차를 전제로 한다<sup>2)</sup>는 제6조 단서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3. 선박경매증서의 발급 및 효력

### 가. 선박경매의 종국성과 자동발급(수정안 제5조 제4항)

수정안 제5조 제4항은 선박경매증서는 경매절차가 종국된 경우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박경매 종국성의 판단 기준 및 경매증서의 자동발급 여부가 논의되었다. 작업반은 선박경매가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대한 각국 입법례가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 선박경매가 종료된 경우 경매국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선박경매증서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같은 항을 수정하였다.

### 나. 선박경매증서의 공증 및 전자적 발급(수정안 제11조)

수정안 제11조 제1항은 선박경매증서에 대해 별도 공증(아포스티유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선박경매증서의 전자적 발급에

2) A judicial sale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at is conducted in one State Party shall have the effect in every other State Party of conferring clean title to the ship on the purchaser, **provided that the judicial sale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requirements in article 4.**

관한 내용으로, 작업반은 같은 조 문안을 유지하되 수정안 제5조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해 조문의 위치를 제5조 다음으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선박경매 취소 시 선박경매증서의 효력(수정안 제5조 제6항)

수정안 제5조 제6항은 선박경매증서는 선박경매가 수정안 제9조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수정안 제6조의 국제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안 제9조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선박경매가 취소된 경우 선박경매증서의 국제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각국의 다양한 의견<sup>3)</sup>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수정안 제5조 제6항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선박경매의 취소에 관한 효력을 규정하는 수정안 제9조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수정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전속적 관할에 관한 규정은 유지하되, 선박경매가 취소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당사국의 국내법을 따르는 것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4. 정의규정(제2조)

수정안 제2조 정의규정 관련, ‘담보권(charge)’,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 ‘저당권(mortgage)’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를 하였다. 작업반은 담보권,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정의 규정은 유지하고, 수정안 제4조 및 제7조에 등장하는 ‘등기된 담보권(registered charge)’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수정안 제2조 (e)호는 저당권이란 (i) 선적국에서 등기 또는 등록된, (ii) 경매국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의해 인정하는 “mortgage” 또는 “hypothèque”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반은 저당권의 정의 규정에 “mortgage”와 “hypothèque”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수정안 제2조 (e)호 (ii) 요건의 삭제에 대해 다수국들이 동의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ii) 요건의 필요성을

3) ① 선박경매증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선박경매가 취소되는 경우 선박경매증서의 국제적 효력 또한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② 선박경매가 수정안 제10조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선박경매증서의 국제적 효력은 유지된다는 견해, ③ 선박경매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선박경매증서의 국제적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예: 매수인의 악의 등)를 열거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 ④ 선박경매증서의 국제적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는 각국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으며, ⑤ 선박경매증서가 발급된 이후 선박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수정안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주장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은 경매국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은 결국 선적국법으로, 선적국법이 인정하는 저장권이란 결국 등기된 저장권을 의미하는 바, (ii) 요건은 (i) 요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III. 평가 및 소감

지난 제37차 회의에서 작업반은 2021년까지 선박경매에 대한 규범 성안을 완료하고 2022년 UN 총회(General Assembly)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회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올해 말까지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르면 내년 중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금번 제38차 회의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 통지의 기능,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 및 일부 정의 규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선박경매증서의 기능 및 효력, 선박경매취소에 따른 권리관계 등에 관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하반기 개최될 차기 회의에서는 선박경매 취소 시 선박경매증서 및 선박경매의 효력, 온라인 등기국(repository)의 운영 방법 및 기타 정의 규정들(ship, purchaser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제38차 회의의 경우 성안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장이 제안한 논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언 검토를 위주로 대비하였으나, 문언 수정보다는 오히려 주요 조문(수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에 대한 해석이 심층적으로 논의되는 등 회의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다.

본 협약은 국가 간에 참여한 이해관계나 분명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있기보다는 각국의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매 절차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해석 및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협약은 선박경매의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외국에서 이뤄진 선박경매에 국제적 효력을 부여하여 선박경매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게 주된 목적인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입법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작업반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나, 협약의 주요 조문들에 대한 해석 관련하여 통일적인 입장이 정립된 것은 아니며, 특히 선박경매 취소의 효력에 대한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의 각 조문 간 유

기적인 관계 및 본 협약이 실제 선박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금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선박경매 취소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매국에서는 선박경매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았으나 등기국에서 선박경매의 효력을 협약상 이유(공서양속 위반 등)로 부인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협약의 해석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업의 선두에 있으며 선박거래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협약이 우리나라 법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차기 회의에 대비하고, 차기 회의 논의 의제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